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도로공사를 할 경우 도로를 절단 후 공사를 하는 경우에 절단기를 이용하여 도로를 절단 하는데 도로절단 거리에 기준하여 절단비를 지급할 때 절단비를 외주비로 간주하는지요?

A 외주비로 간주한다면 산재 임금총액 계산시 간주노임계상(외주비) 하도급노무비율)을 해야 하는데 기계 한 대에 기사한 사람으로 절단작업을 한 때로는 몇 십만원부터 토크공사가(도로)많은 경우 백만원 내지 이백만원까지 지불할 때가 있음

노무비율에 의한 결정방법은 '99년 분 이전 확정보험료는(총공사금액 노무비율)에 의거 산정하고, '00년도 분 이후 확정보험료는 직영인건비+)외주비 하도급노무비율)에 의거 산정 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확정보험료 산정시 총공사금액 및 외주비에서 공제되는 비용은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는 공사비로서 자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비, 중장비등의 임차료, 설계 감리등의 용역비,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인수승인을 받은 외주공사비등이 있음. 따라서, 절단비는 외주비에서 공제대상이 아님.

Q 당사주조합에 국 공립 초 중 고등학교의 보험사무 위탁문의가 있는바 유효기능하지요?

A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무를 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을 준용하여 전년도 매월 말 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사무의 위탁은 하나의 사업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도교육청 산하의 시 군 교육청과 각급 초 중 고등학교의 보험사무의 위탁 범위는 시 군 교육청과 각급 초 중 고등학교의 교직원, 계약직, 일용직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고용보험 100인 미만, 산재보험 300인 미만일 경우 가능하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위탁이 불가능함.

☞한국중립노무법인합술사사무소(031-877-7582-3)

법·률·상·담

변호사 박문우



Q 저는 甲으로부터 액면 금 5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 받았으나 부도 처리되어 그 어음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甲이 행방을 감추어 어음금청구소송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지급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최근에는 甲의 소재를 알게 되어 청구하려고 합니다. 어음상의 청구권은 다른 것에 비하여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A 어음법은 고도의 유통성을 지닌 어음거래의 특성상 법률관계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기간을 보면, ①어음의 주채무자인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 ②어음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거절증서 작성일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 ③소구권의 행사를 받고 상환을 한 배서인의 전자에 대한 소구권, 재소구권에 관하여는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재소된 날로부터 6개월의 시효기간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어음법 제70조 제77조). 이와 같이 어음의 시효기간은 청구권의 종류와 누가 행사하는지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요하며, 귀하의 경우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甲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으로서 만기일(지급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어음금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지급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문우 변호사(031-874-1652)

한·방·상·식

의정부한방병원 한방2과 진료부장 최귀만



사상체질 감별에 대해서

요즘 건강에 대해 조그만 관심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체질에 대해 알고 싶어서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체질의 감별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

반 매스컴을 통해 간단히 소개된 체질 감별 상식을 가지고 본인의 체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체질도 친절히 감별해 주며 본인에게 체질과 다른 식이 요법을 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상체가 크고 어깨가 넓으면 무는 체질이고 허리가 가늘고 하체가 굵

으면 무는 체질이고 하는 단순한 체형만으로 하는 진단은 그 나름대로 참고 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대개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체질 감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격과 외모에서 풍기는 기운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체질 감별은 많은 경험을 쌓고 체질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한 분일수록 정확합니다. 또한, 체질을 잘못 알고 체질에 맞는 음식이라고 체질 식이 요법을 잘못했을 때 오히려 병을 얻을 수도 있으니 가까운 사상체질 클리닉이 설치된 한방병원에서 오랫동안 사상체질 의학을 연구하신 선생님께 상담하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의정부한방병원 (031-820-7200) www.ujhbanbang.co.kr

의·학·상·식

지방공사 경기도 포천의료원 신부인과 과장 강규현



임신 중일이두면 좋을 일만상식

과거, 임신 중에는 되도록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쉬고 먹고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과거와는 달리 임신 중에도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물론 의학적으로도 이러한 임신 중의 활동은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근래에는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해 많은 정보들을 산모분들께서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이미 많은 산모들이 알고 계시는 것들 일 수도 있으나 임신 중의 기본 상식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하고자 한다.

임신전 운동량과 활동량에 맞춰서 임신중의 운동량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임신전에 주로 앉아서 일을 하고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걷는 정도의 운동량이 적당하고, 임신전 운동을 꾸준히 해 온 사람은 가벼운 조깅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신성 고혈압이나 태태임신, 태아의 성장제한, 심한 심장 질환 등이 있는 산모는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직업 활동 :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일은 조산이나 태아 성장제한, 고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과거 저체중아를 분만한 병력이 있다면 육체적 활동을 조절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전통 시작 전까지 무리하지 않은 일은 가능하다.

3) 여행 : 비행기 탑승도 가능하나 분만예정일 7일 이내인 경우는 삼가해야 하고 마지막 달인 경우는 탑승 전 산부인과 의사를 진찰을 받은 후 의사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비행기 탑승중에는 적어도 2시간마다 가볍게 걷도록 한다. 자동차 여행시에는 안전벨트를 하는 것이 유산시에 보다 안전하다. 단 허리에만 두르는 안전벨트는 안 되고 어깨와 허리를 동시에 고정하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4) 목욕 :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으나 단지 목욕중에 미끌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의복 : 너무 조이지 않고 편한 옷을 입으면 된다. 다리를 너무 꽉 조이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6) 변비 : 임신시에는 장의 연동운동이 저하되고 자궁과 태아에 의해 장이 눌려서 변비가 생길 수 있는데, 임신전에 변비가 없었다면 배변습관만 잘 조절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당한 운동, 프룬쥬스(prune juice)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7) 충치 : 임신중 치료가 가능하다. ☞포천의료원 (031-539-9114)

세·무·상·담

공인회계사 송관수



Q 저희 회사는 연간 매출액이 100억 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회사에서 자체 세무조정으로 신고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A 국제정에서는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외부조정신고제도'를 두고 있으며, 외부조정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을 국제정고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27일 개정 고시된 외부조정신고대상법인을 보면 1.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제외) 2.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과 조

세특례를 받은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법인. 4.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법인. 5. 국외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6. 기타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반드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귀회사도 개정된 고시에 의하여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송 관 수(02-404-9944)

어 아이를 사망신고한 후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까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남편은 처의 동의없이 혼인 외 자녀 입적 가능하나, 처는 남편의 동의 필요(민법 제784조) 이는 효적의 주인이 '호주'이며, 효적은 부계혈통만을 이어가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혈통이 아닌 자녀는 효적상 주인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부부평등권에 위배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혼인 외 자녀를 차별하게 되고 남편이 효적입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가 입적할 효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4). 자녀의 성과 분을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만 인정(민법 제781조) 이는 부계혈통을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모계혈통을 무시하는 여성차별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놓은 나라는 없으며, 우리나라만 유일합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가족만이 정상적이라는 인식을 심게 하고 어머니 성을 따르는 가족이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성이 따르게 된 가족들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합니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43th Fashion Outlet AD Corp 43번가 패션아울렛 HARRIS TONE "새로 진입하는 성인층, 다시 젊어지고 싶은 기성세대" Trebis "모던 브리티쉬 맨스웨어" 나이기 팩터리 스토어 베버리힐스 폴로 트레비스 푸마 해리스톤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81-2 Tel.031-541-2390(사) 031-541-4370(매) H.P.011-398-2381 대표 문기태